

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73조의2(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) 제1항, 2항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6. 9. 16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



- 건 명: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서
- 근 거: 고용보험법 제73조의2(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) 제1항, 2항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사업장명 (생년월일)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사유
1	노오현 (1982. 7. 25.)	서울 서대문구 통일로505 (이하 생략)	부지급 결정 통지서	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	폐문 부재

- 공고기간: 2026. 9. 16. ~ 2026. 9. 30. (15일간)
- 기타사항은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정설영(☎: 02-2077-600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